

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

(황효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31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2. 10. 19.
제 출 자 : 황효진, 김동규, 김정택
김철진, 이민근, 한갑수
(6인)

1. 제안이유

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근무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사회복지사업,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.
(안 제2조)
- 나. 사회복지법인, 사회복지시설,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조례 적용대상으로 규정함.(안 제3조)
- 다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과 보수수준의 향상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.(안 제4조)
- 라.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.(안 제7조)
- 마.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규정함.(안 제8조)
- 바.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, 연구 및

홍보사업,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음.
(안 제9조)

사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책추진에
관한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등처우및지위향상
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(안 제11조 ~ 제17조)

아. 사회복지의 날에 모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함.
(안 제18조)

3. 조례(안) : 붙임

4. 관련법령 :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
「사회복지사업법」

5. 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없음

6. 기타 참고사항 : 없음

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사회복지사업”이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.
2. “사회복지기관”이란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고 한다)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,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.
3. “사회복지사 등”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.

제4조(시장 등의 책무) ①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사회복지사 등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한으로

서비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)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6조(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)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에서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.

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·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.

제7조(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
2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
3.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
4. 관련 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5조의3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에게 자료

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,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처우개선 등 사업)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·연구 및 홍보 사업
2.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·훈련지원 사업
3.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
4.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
5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신변안전 보호) 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위원회 설치)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등처우및지위향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2.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3.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

제1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안산시의원
2. 사회복지기관 대표 및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
3. 관련 전문가
4.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.

제13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

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6조(의견청취 등)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7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8조(포상) 시장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「안산시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1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출년월일 : 2012년 10월 31일

제 출 자 : 문화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위원회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기 보다는 기존의 유사 역할의 위원회를 활용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사회복지사등처우및지위향상위원회의 역할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행하고 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.

(안 제11조 ~ 제17조)

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등처우및지위향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-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「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」에 따른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.
-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 1.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 2.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 3.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
 4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
- ④ 위원회의 구성, 위원의 해촉, 회의,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「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삭제한다.

안 제16조를 제12조로 한다.

안 제17조를 삭제한다

안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를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.

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신구조문 대비표

원안	수정안
<p>제11조(위원회 설치)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등처우및지위향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.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.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	<p>제11조(위원회 설치 등)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등처우및지위향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「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」에 따른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.</p> <p>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.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.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<p>④ 위원회의 구성, 위원의 해촉, 회의,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「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」를 준용한다.</p>
<p>제12조 ~ 제15조 (생략)</p>	<p>제12조 ~ 제15조 <삭 제></p>
<p>제16조 (생략)</p>	<p>제12조 (원안과 같음)</p>
<p>제17조 (생략)</p>	<p>제17조 <삭 제></p>
<p>제18조 (생략)</p>	<p>제13조 (원안과 같음)</p>
<p>제19조 (생략)</p>	<p>제14조 (원안과 같음)</p>

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(수정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사회복지사업”이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.
2. “사회복지기관”이란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고 한다)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,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.
3. “사회복지사 등”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.

제4조(시장 등의 책무) ①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사회복지사 등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서비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)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6조(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)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에서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.

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·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.

제7조(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
2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
3.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
4. 관련 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5조의3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,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처우개선 등 사업)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·연구 및 홍보 사업
2.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·훈련지원 사업
3.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
4.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
5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신변안전 보호) 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위원회 설치)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등처우및지위향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「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」에 따른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.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2.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3.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

④ 위원회의 구성, 위원의 해촉,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「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2조(의견청취 등)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3조(포상) 시장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「안산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